

인공지능 시대의 뉴스 저작권 및 공정이용 논란:

최근 미국 판례와 한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챗GPT(ChatGPT) 및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대중에게 소개된 이후,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말 오픈AI(OpenAI)는 AP통신 및 악셀 스프링어(Axel Springer)와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협약을 맺었으며, 구글 또한 2024년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뉴스 코프(News Corp)와 인공지능 콘텐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¹⁾ 한편, 미국의 대표적 신문사인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2023년 12월 오픈AI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²⁾ 이듬해인 2024년에는 뉴욕 데일리

1) <https://www.reuters.com/technology/google-pay-up-6-mln-news-corp-new-ai-content-information-reports-2024-04-30/>

2) <https://www.nytimes.com/2023/12/27/business/media/new-york-times-open-ai-microsoft-lawsuit.html>



뉴스(New York Daily News),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올랜도 센티넬(Orlando Sentinel) 등의 신문사 8곳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³⁾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 간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을 둘러싼 갈등을 개별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대응해 오고 있다. 오픈AI를 비롯한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기업들도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업과 저작권자 간의 갈등에 관한 미국 내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의 무단 저작물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첫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 간 제기된 소송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뉴스 저작권 및 공정이용 논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인공지능의 저작물 무단 학습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미국 최초 판결이 갖는 함의

2025년 2월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⁴⁾ 공정이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에 대한 한계 내지 제한으로 기능하고 있다.⁵⁾ 이 판결에서도 피고인 인공지능 기업은 원고 기업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공정이용’을 주장하였다. 해당 법원은 원고의 부분 약식판결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약식판결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⁶⁾

비록 이 판결이 뉴스 저작물에 관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인공지능의 저작물 무단 학습과 이를 둘러싼 공정이용 논란을 최초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미국 판결이다.

³⁾ <https://www.theverge.com/2024/4/30/24145603/ai-openai-microsoft-new-york-daily-news-sue-copyright>

⁴⁾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2025 WL 458520 (D. Del. Feb. 11, 2025).

⁵⁾ Sang, Y., Auferheide, P., & Kim, M. (2021). Fair use in practice: South Korean film directors' copyright understan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5, 927–949.

⁶⁾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2025 WL 458520 (D. Del. Feb. 11, 2025).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명 법률 연구 플랫폼인 웨스트로(Westlaw)의 소유주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는 인공지능 기반 법률 연구 서비스 신생 기업인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웨스트로의 독점적인 ‘헤드노트(Head Note)’⁷⁾를 불법적으로 복사하여 검색 엔진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제3자 회사를 통해 웨스트로의 ‘헤드노트’를 참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로스 인텔리전스의 검색 도구를 훈련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판결에서 스테파노스 비바스(Stephanos Bibas) 판사는 로스 인텔리전스의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인공지능의 학습과 공정이용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축소하기도 한다.⁸⁾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판결이 앞으로 나올 수많은 판결에 인용되고 양측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해당 판결에서는 웨스트로의 ‘헤드노트’가 저작권의 대상인지 아닌지, 로스 인텔리전스의 훈련 단계에서 이루어진 복사 행위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로스 인텔리전스가 웨스트로의 ‘헤드노트’를 이용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것이 웨스트로 소유주인 톰슨 로이터의 저작물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시장을 대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⁹⁾ 이 판결에서 판사는 웨스트로의 ‘헤드노트’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큼 독창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헤드노트’가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의 핵심을 요약하거나 개요를 짧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법원의 판결문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법원 판결의 핵심을 간결하게 인용하면서 제시하는 ‘헤드노트’가 저작권에서 요구하는 독창성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에서 판사는 웨스트로의 ‘헤드노트’가 판결문에서 어느 부분을 인용할 것인지를 선택한 것으로 독창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 시 미국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이다. 이 판결에서도 해당 법원은 “그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

7) ‘판례 요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헤드노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8) <https://www.jdsupra.com/legalnews/ai-training-fair-use-and-the-burdens-of-1030642/>

9) <https://www.jdsupra.com/legalnews/ai-training-fair-use-and-the-burdens-of-1030642/>

을 위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사용의 목적과 성격¹⁰⁾을 검토하였다. 이 판결에서 로스 인텔리전스가 웨스트로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상업적 목적이었고, 해당 법원은 그 이용이 변형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 점이 로스 인텔리전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해당 법원은 ‘헤드노트’가 최종 이용자에게 그대로 복제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도구를 훈련시키는 중간 단계에 활용된 것일 뿐이라는 ‘중간 복사’와 관련된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중간 복사가 공정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이러한 주장 또한 기각하였다.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이다.¹¹⁾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작품일수록 더 보호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에서 해당 법원은 톰슨 로이터사가 저작권을 가진 웨스트로의 ‘헤드노트’가 창의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창의성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톰슨 로이터의 ‘헤드노트’가 창작적인 요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쉽게 인정되는 다른 저작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두 번째 요소에 대한 판단은 로스 인텔리전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정이용 판단의 세 번째 요소는 “사용된 부분의 양과 그 중요성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전체와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정도”이다.¹²⁾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 시 이용된 자료의 양뿐 아니라 그 질적 가치와 중요성도 함께 고려해 왔다. 이 판결에서 판사는 기존 *Authors Guild v. Google, Inc.* 판결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복제 과정에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어 경쟁적 대체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의 양과 중요성이다”라고 주장했다.¹³⁾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당 판결에서 판사는 로스 인텔리전스가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한 결과물에 웨스트로의 ‘헤드노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고, 로스 인텔리전스는 웨스트로의 ‘헤드노트’들을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에서 판사는 공

¹⁰⁾ 17 U.S. Code § 107

¹¹⁾ 17 U.S. Code § 107

¹²⁾ 17 U.S. Code § 107

¹³⁾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2025 WL 458520 (D. Del. Feb. 11, 2025).

정이용의 세 번째 요소는 로스 인텔리전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번째 요소는 “해당 사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¹⁴⁾ 이 판결에서 판사는 네 번째 요소가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스테파노스 비바스 판사는 결론적으로 로스 인텔리전스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웨스트로의 시장 대체물을 의도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톰슨 로이터가 자사의 법률 검색 도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해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인공지능 훈련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위한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면서, 공정이용의 네 번째 요소가 원고인 톰슨 로이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로스 인텔리전스의 서비스가 대중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가져다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로스 인텔리전스의 공정이용 주장을 기각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판사는 로스 인텔리전스와 톰슨 로이터 간의 법적 다툼은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Google LLC v. Oracle America*¹⁵⁾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준 사례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로스 인텔리전스가 톰슨 로이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판결에서 판사는 공정이용 판단의 첫 번째와 네 번째 요소는 원고인 톰슨 로이터에 유리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들은 피고인 로스 인텔리전스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언급하면서, 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다. 이로써 로스 인텔리전스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남은 사실적 쟁점은 톰슨 로이터의 저작물의 일부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적시에 생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고, 저작권의 유효성과 관련된 사실적 판단은 배심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¹⁶⁾ 이 판결이 앞으로 있을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존 저작물 학습과 이를 둘러싼 공정이용 항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저작물을 중간 복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의 논의는 향후 유사한 공정이용 판결들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¹⁴⁾ 17 U.S. Code § 107

¹⁵⁾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593 U.S.____ (2021).

¹⁶⁾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2025 WL 458520 (D. Del. Feb. 11, 2025).

지상파 방송 3사와 네이버 간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

그동안 국내 언론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 뉴스 배포 및 소비를 둘러싼 주도권을 빼앗기고 종속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¹⁷⁾ 포털이 새롭게 시장에 등장한 이후 언론사들은 뉴스 콘텐츠의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노력 대신 포털상에서 클릭 수를 통해 올리는 수익에 더 집중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널리즘 생태계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지금 포털과 언론 간에 형성되어 온 상호 의존과 갈등을 둘러싼 논의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언론을 둘러싸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학습에 신문사들의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언론사들은 포털에 종속되어 온 과거와는 달리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인 KBS, MBC, SBS는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가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¹⁹⁾ 한국방송협회는 이미 2023년 12월에도 국내외 주요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발송한 의견서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KBS, MBC, SBS 등 한국방송협회 회원사의 과거 및 최신 뉴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뉴스 콘텐츠 및 영상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을 금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²⁰⁾ ‘한국방송협회 AI 태스크포스’는 네이버뿐 아니라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한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²¹⁾

뉴스는 공공재이자 상품이다.²²⁾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저작물에 비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저작권 인정의 정도를 둘러싼 논쟁이 존재한다.²³⁾ 현재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다만 국내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에 대해서 다양한

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20698.html>

18)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7887>

19) http://www.kba.or.kr/bbs/board.php?bo_table=m02_06&wr_id=298

20) http://www.kba.or.kr/bbs/board.php?bo_table=m02_06&wr_id=278&page=2

21) <https://www.mk.co.kr/news/it/11217242>

22) 상윤모, (2024).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과 뉴스 저작권에 대한 고찰,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호, pp95-134. 참조

23) Slauter, W. (2019). Who owns the news? A history of copyright. Stanford University Press.

저작권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법 제7조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조항 중 제26조나 제27조 등도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제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우리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법리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각급 법원에서 공정이용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됐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²⁴⁾ 국내에서는 포털을 중심으로 뉴스 유통 및 소비문화가 형성되어 오면서 뉴스에 대한 저작권 인식 문화가 더디게 형성되어 온 편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내 주요 포털들과 언론사들 사이에는 뉴스 제휴 약관 관련 불공정 논란이 지속돼 온 가운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을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커졌다. 최근 국내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그 판결 결과에 따라 뉴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글을 마무리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인공지능의 학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사가 ‘변형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공정이용 판단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는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만, 네 번째 요소인 “해당 사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부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및 해외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 간 뉴스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들이 성사되고 있다는 점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시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등의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4) 이일호, (2023).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황과 과제-판례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제36권 제1호, pp151-192. 참조

톰슨 로이터와 로스 인텔리전스 간의 다툼에서 로스 인텔리전스의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니었으며, 웨스트로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이 판결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이용 법리가 미국과 비교하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국내에서는 2024년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의 판례가 두 건 나왔다.²⁵⁾ 그런 만큼, 뉴스 저작권 이슈와 공정 이용 법리 또한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4년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언론 유관 단체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대 뉴스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²⁶⁾ 한편, 국내에서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학습 데이터가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뉴스 저작권자 간의 뉴스 이용 계약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²⁷⁾ 앞으로 국내 법원도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물 학습과 관련된 판결 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논의된 미국 법원 판결의 쟁점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뉴스 콘텐츠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뉴스 콘텐츠의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 간 뉴스 콘텐츠 활용과 수익 배분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25)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2603>

26) <https://www.kpf.or.kr/front/research/selfDetail.do?seq=598871>

27) 김대규·홍순건, (2024),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뉴스 저작물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제23권 제3호, pp137-177, 참조